

초청강연

| 일시 2023년 10월 26일(목) 16:10~17:00 | 장소 300C



박노벽

前)주우크라이나대사
前)주러시아대사
前)한미원자력협정개정
대사

국제정세의 변화와 한미간 원자력협력 기대

한미양국은 2015년 원자력분야를 선진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로 나아간다는 목표하에 원자력협력협정을 대폭 개정하였다. 개정작업은 구 협정 체결후 40여년이 경과하면서 변화된 당시 상황을 반영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한미간 폭넓게 원자력협력을 확대하는 틀을 만들자는 데 공감하여 이루어 졌다. 그 결과, 민감분야 연구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협력방식과 고위급위원회 설치와 가동방식 등을 도입하였다. 특히 원전수출도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원전수출사례를 감안하여 향후 협업 수출 사례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촉진하고자 했다.이를 위해, 양국 산업체간 상호 보완적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원전물품 수출시 신속한 인허가, 농축연료 확보 협조 등도 포함하였다.

세월이 경과하면서 국내외 정세의 급변속에 양국협력상에 큰 도전과 기회가 생겼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에너지기구(IEA)에 이어 유럽연합의회는 2022년 원자력을 탄소중립전환을 위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원자력이 이산화탄소배출 없는 에너지로서 중요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원이면서 청정 에너지 경제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요소라는데 국제적으로 공인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독일은 지난 5년동안 국내총생산의 정체를 계속 겪고 있다. 그 주된 원인중 하나는 원전폐쇄와 가스의존 등 비합리적인 에너지정책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에서 교훈을 주고 있다.

둘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쟁 개시로 러시아가 공급해온 농축서비스의 대안수립이 필요해 졌다. 즉, 러시아는 저렴한 농축우라늄 공급으로 국제수요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등 서방은 러시아산 농축의 수입을 중단할 수 없어 일단 제재의 예외로 두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전쟁장기화나 향후 러시아와의 대립지속에 대비하여 러시아산 농축을 대체하는 시설 도입이나 국제 협력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한수원과 웨스팅 하우스간 APR 1400에 대한 지적 재산권문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제기되어 있다. 국제안보 현실의 급변추세를 직시하여, 관련 원자력계와 양국정부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속한 해소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미 양국은 새로운 국제환경변화에 직면하여, 국익을 위해 협력할 분야가 많다. 그중 시급히 협력할 중요한 분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가격 급등에 직면한 유럽 등 제3국이 필요로 하는 원전의 수출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한미 양국정부와 산업체간 상호 강점과 약점을 보완하여 협력하는 기회를 창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원전은 핵물질 분해와 이용이라는 특성상, 단순 전력생산 시설이 아니라, 핵비확산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전공급국은 원전 접수국에 대해 원전과 이용된 핵물질에 대해 법적 통제권을 갖고, 실질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도 한미간 원자력협력이 더욱 긴밀해 질 이유가 충분히 있다.

둘째, 제3국 원전수출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양국이 협력하여 유리한 자금조달 방법을 마련하며 공평한 이익공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셋째, 농축 연료의 제 3국 의존도 감축을 글로벌 공급망 안정 차원에서 준비하기 위해 양국 협력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넷째, 사용후핵연료 기술을 개발토록 협력하여, 핵 폐기물처분에 대한 각자 국내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다섯째, 중소형원자로 등 차세대 첨단 원자력 기술이 경제성을 갖고 이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산업계가 필요한 연구 및 상용화를 위해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

결론적으로, 한미 양국은 세계적 원자력확대와 비확산의 중요성에 비추어, 큰 틀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협력 본격화를 위해 폭넓은 시야를 갖고 많은 지혜와 다각도의 노력을 보여줄 때이다.